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 립 총 회

투명사회를 위한 CFOI 정보공개센터

일시: 2008. 10. 9. 늦은 6시 30분
장소: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순서

I. 경과보고 4

II. 총회 안건 6

1. 정관(안) 보고 ····· 6
2. 임원진 구성(안) ····· 9
3. 사업계획(안) ····· 11
4. 예산(안) ····· 17
5. 기타 논의 사항 ····· 18

III. 창립선언문 1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총회 및 행사 순서

사회 ..... 하승수 준비위원

인사말 ..... 이승휘 준비위원

[창립 총회]

경과 보고 ..... 신승남 준비위원

총회 안건 보고 .....

정관 안 소개 및 동의 ..... 이승휘 준비위원

임 원 진 소개 및 동의 ..... 김영희 준비위원

사업 소개 및 동의 ..... 이소연 준비위원

예산안 보고 ..... 하승수 준비위원

창립선언문 낭독 ..... 한학수 준비위원

[이후 행사]

정보공개청구 이벤트 ..... 김혜영(회원)

고사식 진행 ..... 신승남 준비위원

I. 경과보고

- **2008년 4월**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정보공개연구소 설립 추진 결정
- **2008년 5월 30일**
  - 정보공개연구소 설립 관련 보도자료 배포
  - 한겨레21,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기자협회보 게재
- **2008년 6월 12일**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10주년 기념식과 정보공개연구소 후원의 밤' 개최
- **2008년 7월 11일**
  - 정보공개연구소 1차 준비위원회 모임
  - 단체 명칭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변경함, 창립일과 재정운영원칙(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을 결정
- **2008년 8월 6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차 준비위원회 모임
  - 조직형태, 회비원칙 등을 결정
- **2008년 8월 27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3차 준비위원회 모임
  - 대표·소장 등 임원진 구성안 확정
  - 사업준비위원회, 재정준비위원회, 정관준비위원회 구성

- **2008년 9월 22일**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건물 1층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실 입주
- **2008년 9월 29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차 준비위원회 모임
  - 정관(안) 및 주요사업(안) 결정

II. 총회 안건

1 정 관(안) 보 고

● 정관(안) 주요내용 (※정관(안) 전문 별첨)

◆ 목적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②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③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④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⑤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조직 구성

◆ 회원

◆ 임원

① 대표 4인 이내 (1년)

-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됨

② 이사 30인 이내 (2년)

-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③ 감사 2인 (2년)

- 본 단체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
-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
-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

④ 소장 1인 이내 (1년)

-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함

⑤ 자문위원 30인 이내 (2년)

◆ 사무국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를 두며 사무국장의 임명은 이사회에서, 상근간사의 임명은 소장이 함.

회의체계

◆ 총회

① 구성: 회원으로 구성함

② 종류:

- 정기총회(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
- 임시총회(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총회원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요구

가 있을 때/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개최)

③ 의결:

-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① 구성: 이사로 구성함

② 개최:

-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개최

③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임 원 진 구 성(안)

**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아래의 분들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임원진으로 추천합니다.

대표

김영희(MBC PD), 신승남(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 이승휘(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이사

곽건홍(한남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경건(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김영희(대표겸직), 김용진(KBS 기자), 김용출(세계일보 기자),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재호(KBS 기자), 신동호(경향신문 부국장), 신승남(대표겸직), 이민규(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휘(대표겸직), 이재명(한겨레신문 기자), 임종인(변호사, 전 국회의원), 정광모(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정재호(국민일보 사회부장), 조영삼(한국국가기록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조호연(경향신문 탐사 에디터), 하승수(소장겸직), 한학수(MBC PD), 홍일표(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황성섭(아름TV 상무이사)

소장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감사

이광수(변호사), 이재호 (홍익대 법대 교수)

자문위원

김진덕(덕일종합개발 대표이사), 박대용(춘천MBC 기자), 엄경섭(녹영종합건설 대표이사), 오승은(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정(명지대 박사과정), 정헌배(케이넷피 기획실장), 홍소영(미디어홍 대표)

사무국

전진한(사무국장), 임정섭(미디어팀장), 정진임(간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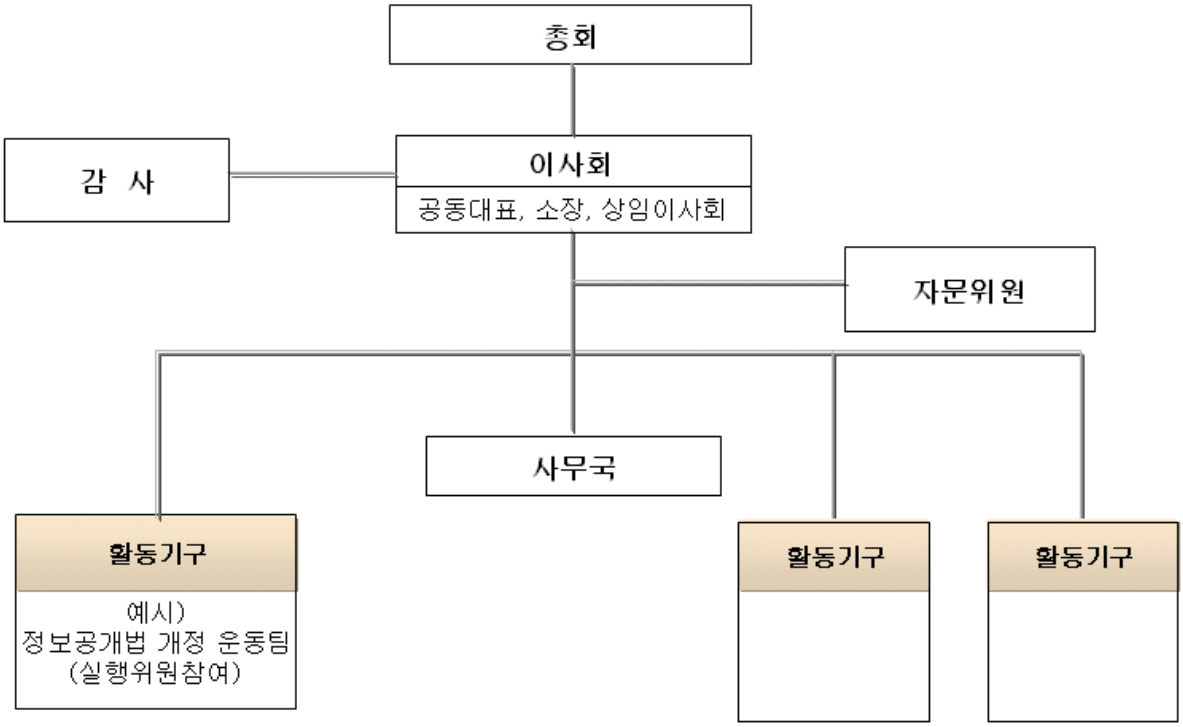

3 사 업 계 획 (안)

❶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 조사

● 취지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위축되어가고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조사기관

대통령실,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이상 25개 기관.

● 조사방법

정보공개청구

● 조사항목:

- 2008년 2월 25일~2008년 9월 4일 현재까지 작성된 정보공개청구 처리 대장(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
- 2008년 2월 25일~2008년 9월 4일 현재까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개최일시, 개최안건)
- 정보공개심의회 심위위원 명단 (성명 및 소속, 직업)

❷ 비밀보호법 기획

취지

비밀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위축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또한 이를 계기로 비밀보호법을 제대로 입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함.

내용

■ 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 비밀의 개념을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중요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戰時)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비밀에서의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 마련

■ 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

- 비밀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그 조항 자체가 모호해 비밀의 여부를 해석하는 데에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비밀의 수집, 탐사, 유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접근을 통제함.

- 법령의 위반사실 은폐, 업무 수행상의 과오 또는 과실 등의 은폐,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제한 또는 지연을 위해서 비밀 지정을 하면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막상 지정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음.
- 국정원 스스로 비밀기록 생산기관이지만,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및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관한 경위조사와 이에 따른 전속 고발권을 부여받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사업방법**

언론사와 공동기획

❸ 정보전달 중심의 사업 진행

● **배경**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단체 자신이 주체가 된 이슈파이팅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해 왔음. 그 결과 권력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일반적인 포지셔닝이 되어 버린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으로는 각 시민단체 간 차별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 버린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한편 반크와 같이 신개념 시민단체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

를 일반시민들에게 찾아주고 그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

사업구상

1) 선택, 그리고 집중

① 내용

- 정보공개센터는 몇 개의 사안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할 필요성이 있음. 그 방법의 하나로 블로그 및 정보공개뉴스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분류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정기적, 수시적으로 전국 시도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그 내용 및 응답기관 등을 충실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② 효과

-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가 센터를 중심으로 집적되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접근률이 높아짐. 이는 '반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공개센터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③ 방법

◆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공개와 관련 된 내용 제공

- 정보공개와 관련된 각종 논문, 해외의 정보공개 현황 및

효과, 우리나라 정보공개판례, 정보공개 Q&A,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노하우, 기관별 공개 정보공개내용 등을 제공

◆ 정보공개청구뉴스사이트 오픈

-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정보(청구이외에 검색등으로 자체개발)를 뉴스화 해서 메타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함.
- 지역별로 시민정보공개청구 기자단을 모집 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함. (독립이 가능할 경우 독립 블로그로 확대할 수 있음)

2) 정보공개 우수단체 시상

① 내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청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단체들을 평가하여 상위에 랭크되는 단체들에게 '정보공개상' 시상하도록 함.

② 효과

-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상장기업, 종교시설, 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정보공개율을 측정함.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를 통해 정보공개에 미흡한 기관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음.

(ex)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재정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적으로 여파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

3) 국민의 알권리에 방해되는 각종 법 조항을 분석 해 집적 및 논평

- 국민의 알권리에 방해되는 법 조항 등을 분석해 집적하여 알려내고, 법 개정운동도 전개함.

4) 기록의 생산, 관리, 이관, 폐기 실태 점검

- 국민의 알권리에 기반이 되는 기록의 생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평을 전개함. 특히 비밀보호법,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등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기고 등을 통해 여론화함.

5) 언론과 공동기획

- 정보공개센터는 일상적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기록을 언론과 공동기획 형식으로 하여 제공 하도록 함.

6) 회원들에게 정보제공

- 회원들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웹진형식으로 전달해 최신의 고급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함.

4 예산(안)

2008년 예산안

◆ 수입보고

- 10월 9일 현재 165명의 회원가입으로 매월 2,520,000원의 후원회비가 확보됨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인큐베이팅 자금 35,000,000원을 지원함

◆ 정보공개센터 운영예산안

月 지출	계정과목	月 수입
	회비 수입	CMS 납부 회원 350명목표(450만원)
	사업 수입	
	후원의 밤	연 : 12,000,000(월 1백)
전체 : 2,800,000 사무국장 : 1,500,000 간사 : 1,300,000	급여	
400,000	활동가 복리후생비	
700,000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200,000	발송비	
500,000	사업비	
300,000	통신비	
300,000	각종 세금 및 CMS수수료	
300,000	기타 잡비	
5,200,000(월)	총액	5,500,000(월)

5 기타 논의사항

Ⅲ. 창립선언문

<정보공개센터, 우리 시대 희망을 쏘아 올려라>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의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인 알 권리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단히 근원적인 기본권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정보의 자유가 인간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다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시민인 우리들. 진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위해 '정보 소외와 불평등'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도 헤쳐나가야 하는 존재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는 진실에 더 가깝게 할 것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특히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시대. 광범위한 정보공개와 풍부한 정보의 자유야말로 한 조직과 사회, 우리 인류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키워주는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직과 사회, 그리고 우리 인류는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더 많은 검증과 더 새로운 비판 속에서 진실과 진리에 다가갈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현실은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가 아직은 모두의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며 우리를 매우 절망하게 만든다. 의회와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국익' 등의 이름으로 비공개의 그늘로 숨기려 하고, 사법부와 국가는 광범위한 정보공개와 폭넓은 정보의 자유에 대해 아직도 인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 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아직도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더욱 뼈저리다. 저마다의 이유와 시대적인 암흑 등이 겹치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주춤거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분연히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기록과 정보의 공개와 공유, 자각된 참여만이 우리들의 희망임을 믿으며 스스로의 안일과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동한다.'정보공개센터'의 가슴 벅찬 이름으로 더 넓고 깊은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위해 한발 한발 대장정을 선언한다. '정보공개센터'. 우리 시대의 희망을 쏘아올려라.

2008년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